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홍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43 발의연월일: 2021. 4. 7.

발 의 자:김홍걸·고영인·김민철

김수흥 · 송재호 · 양정숙

유정주 • 이규민 • 임오경

조승래 · 조정식 · 한병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일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. 통일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우리나 라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, 통일교육에 대한 정 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.

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 외에도 기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지역별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있음. 정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현황 역시 파악 및 분석을 하고,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반영하여야 함.

이에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청반

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설치하고자 함(안 제6조의8 신설 및 안 제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8(자료제공의 요청) 통일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 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8(자료제공의 요청) 통일
	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
	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
	통일교육 실태의 조사가 필요
	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
	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별시
	<u>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</u>
	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"교
	육감"이라 한다), 그 밖에 대통
	<u>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이</u>
	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등"이
	라 한다)의 장에 대하여 관련
	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	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
	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
	<u>야 한다.</u>
제8조(학교의 통일교육 진흥) ①	제8조(학교의 통일교육 진흥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	2
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(제	
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	
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)	
이 초·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	

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
또는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</u>
<u>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</u>
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에
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
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
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
영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교육감
<u>.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